

대구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8가단6553(본소), 2018가단1894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나320536(본소), 2020나320543(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8가단655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피고(반소원고) D

변 론 종 결 2020. 8. 21.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D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D 사이의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반소피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D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들(반소원고 D을 포함, 이하에서는 피고 C와 D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D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다. 원고, 원고의 남편 B, 피고 D, 소외 E은 2013. 10. 17. 안경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0. 17.부터 2014. 5. 16.까지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4. 5. 16.부터 2016. 10. 17.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60%는 피고 D이, 나머지 주식 40%는 E이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2017. 6. 27. 소외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한 투자금과 차입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140,078,41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고(피고 D의 보유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미이다), 원고가 이미 지급한 6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인정하며, 나머지 잔금 80,078,41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양도자와 양수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 및 양수금액은 별첨 1에 따른다.

<첨부1> 양도 및 양수확인서

양도금(원)	중도금	잔금(원)
140,078,410	60,000,000	80,078,410

나. 잔금은 2017년 10월 15.일로 한다.

다. 본 합의서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대표이사의 선임, 변경 및 업무 일체를 양도한다.

3. 나항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항의 원상복귀의 권한을 가지며, 집행된 금원은 반환한다.

4.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일자가 생략된 대표이사

사임서를 입회자(E)에게 위탁하며, 입회자는 합의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이행한다.

5.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합의일까지 이행된 금액을 영수하여 확인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2017. 6.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약정을 해제하고 2018. 1. 4.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D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9. 11. 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D이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기술 및 운영을 맡기로 하고 D과 함께 안경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4.경 D이 투자한 1억 4,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위 회사를 인수하여 전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5. 5. 10. 피해자 회사의 G은행 계좌에서 위 약정에 따른 인수자금 명목으로 D이 지정하는 (주)H I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3,4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양도대금 중 6,000만 원은 중도금으로 이미

지급하였고, 2018. 1. 23. 2,000만 원을 피고 C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들은 2018. 1.

4.자로 이 사건 양도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약정 제3조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8,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피고 C는 원고와 이 사건 양도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소외 회사와 무관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 중 공금 3,000만 원을 횡령하여 피고 D에게 송금하였고, 2018. 1. 23. 피고 D에게 송금한 2,000만 원도 회사의 공금이다.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 D이 원고에게 송금한 3,7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D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C가 이 사건 양도약정의 해제로 인한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C가 피고 D의 처로서 2018. 1. 23. 2,000만 원을 피고 C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환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가 지급한 중도금 6,000만 원

원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피고 D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중도금 6,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2015. 5. 10.부터 2016. 9. 1.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고 D과 주식회사 H에 송금한 합계 3,450만 원 중 3,000만 원이 위 중도금의 일부로 인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 C의 G은행 계좌로 2017. 6. 26. 1,800만 원을, 같은 달 28. 1,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원고가 이미 지급한 6,000만 원을 피고 D이 중도금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2018. 1. 23. 2,0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23. 소외 회사의 돈 2,200만 원(기업은행 1,400만 원, G은행 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는데, 피고 D이 원고에게 회사 통장으로 반환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피고 D에게 ‘피고 C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C의 계좌로 그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다시 소외 회사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2018. 1. 23.자 2,0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8. 1. 4.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상회복 의무로서 원고에게 그 계약 제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 중 소외 회사의 자금 3,450만 원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횡령금 중 3,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였다.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 D이 2013. 9. 16.부터 2014. 1. 18.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합계 3,7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은 회사公款이고, 피고 D의 돈이므로, 피고 D은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횡령금 3,0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15. 5. 10.경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1. 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횡령금 3,450만 원 중 3,000만 원은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중도금 6,000만 원의 일부로 인정되고, 피고 D이 이를 영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비록 3,000만 원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돈이라고 할지라도, 차후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반환 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D이 직접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 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자신이 지급받은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D이 송금한 돈 3,7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2013. 9. 16. 200만 원, 2013. 10. 31. 300만 원, 2013. 11. 12. 500만 원, 2013. 12. 16. 1,600만 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1. 18.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돈 3,7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양도약정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위 3,7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 7, 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2013. 10. 17. 설립되었는데,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설립 이전인 2013. 9.경부터 회사의 설립 당시 부족한 운전자금 및 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3,7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 ② 위 돈은 소외 회사의 물품구매 및 영업접대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 집행 내역도 피고에게 보고된 사실, ③ 마지막 송금 일자인 2014. 1. 18.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D이었던 사실, ④ 만약 피고 D이 위와 같이 송금한 3,700만 원 중 그 일부인 3,000만 원을 되돌려 받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중도금 조로 6,000만 원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관한 영수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원고로부터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D, 입회인 E이 그 합의서에 각 서명날인한 사실, ⑤ 원고는 2017. 3. 8.경 암 판정으로 J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1,856,061원의 일부금, 2017. 6. 21. 원고의 언니 K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등으로 피고 C의 G은행 계좌로 2017. 6. 26. 1,800만 원을, 같은 달 27. 1,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3,700만 원에 관한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3. 피고 D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자금 차입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2013. 9. 16. 200만 원, 2013. 10. 31. 300만 원, 2013. 11. 12. 500만 원, 2013. 12. 16. 1,600만 원, 2013. 12. 31. 100만 원, 2014. 1. 18.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원고는 대금상환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 D에게 위 3,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위 3,7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D의 청구를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약정금 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D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해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3.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D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허용구